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

2. 조치일 : 2020. 1. 13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자체 여신감리업무 강화

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은 자체 여신감리 조직을 운용하지 않고 있고 내부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신감리 업무를 모은행의 여신감리부*에서 수행하고 있음

* 전월중 취급한 O억 루블(RUB) 이하의 대출자료를 익월 15일까지 모은행 여신감리부에 제출 [◇억 루블(RUB) 초과 여신은 본점의 사전협의 후 취급하고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]

또한, 최근 거액 신디케이트대출(2018년 중 □□백만달러) 취급 및 2019년 사업계획상 현지 여신확대 전략으로 최근 대출자산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부적격 신용등급(BB+이하) 차주 비중이 ◎◎%를 차지하고 있으며

언어 및 국가간 규제 차이* 등으로 모은행의 여신감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여신감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

* 러시아어 번역 문제, 현지 법률·규제 상이, 신용평가등급 산정 차이(모은행 기준 신용평가등급 매칭 불일치 포함) 등

(2) 신용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 조정 필요

우리은행 러시아 현지법인은 이사회 산하에 리스크 정책결정(여신리스크 제외) 및 리스크보고서 심의 등을 위하여 재무위원회*를 운영하고 있고 여신리스크 정책

결정, 여신심사 및 승인 등을 위하여 신용위원회*를 운영하고 있음

* 총 8명 : 은행장(위원장) 및 위원 7명(부법인장, 수석회계사, 리스크 책임자, 기업금융 팀장, 매니저 3명)

한편, 내규「재무위원회 규정」및「신용위원회 규정」에 따라 구성된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동일하며, 특히 신용위원회의 경우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규「대손충당금 규정」제3조에 따른 부실채권 대손상각에 대한 부책심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음

이는 업무간 이해상충 및 견제기능 제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고, 신용위원회의 부책심의 업무를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와 분리하여 신용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등 관련 위원회의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